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농가 소유 및 임차 차량 의무등록 예외규정 운영 지침(안) 의견조회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3.4.18.)에 따른 축산농가 소유 및 임차 차량(승용차 및 승합차)의 축산차량 등록 의무화와 관련됩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2의2]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2. 위의 개정 사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유 또는 임차한 승용차(또는 승합차)로 농장을 출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또는 지형 여건상 농장 외부에 주차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하여 등록 의무가 면제(의무등록 예외규정)됩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부는 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 예외규정 운영을 위한 지침(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지자체(시·도) 및 협회·단체 등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3. 5. 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임)

* 지자체는 동 지침(안) 운영을 위해 서울행정시스템 연동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검토

4. 아울러 지자체(시·도)는 관내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소유·임차 승용차(또는 승합차)의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수요를 조사하여 2023. 6. 20.(화)까지 <붙임3>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 예외규정 운영 지침(안) 1부.
2.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3.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수요조사 양식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방역정책과장, 구제역방역과장,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축산환경자원과장, 축산유통팀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방역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동물방역과장), 전라북도(동물방역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사단법인 낙농진흥회, 농협중앙회(축산경제), 농협중앙회(축산물위생교육원), 농협중앙회(축산유통부),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장,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사)전국한우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한국가금수의사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장, (사)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사)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사료협회, 사단법인 한국사슴협회장,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육계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한국메추리산업연합회,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사)한국양봉협회

주무관 **채진욱** 사무관 **조현준** 조류인플루엔자 전결 2023. 5. 19.
자방역과장 **홍기성**

협조자

시행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3. 5. 19.) 접수
4230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53 팩스번호 044-868-9210 / jinuk94@korea.kr / 비공개(5)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